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글로벌비즈플랜보험 2004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1년 만기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80세

라.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 · 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 1)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 2) ‘1)’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 · 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율 및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고액계약단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를 당해연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한다.

가. 할인대상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나.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라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환산연납영업보험료	할인율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5.0%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20.0%
5,000만원 이상	25.0%

다. 할인금액

단체별로 매 보험기간 동안에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에 ‘나’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 × 할인율
(주)

납입할 영업보험료

$$\text{환산연납영업보험료} = \frac{\text{(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k}$$

다만, k는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k	0.0845	0.2527	0.5035	1

라. ‘가’에서 ‘다’ 까지의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아래와 같이 ‘기본형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기본형 단체실손의료보험에 부가 가능한 ‘선택 특약’을 말한다

구분	상품 명칭
기본형 단체 실손의료보험	무배당 비즈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
선택 특약	무배당 비즈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 비즈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 비즈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보험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피보험단체

‘가’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

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가’의 ‘2)’ 및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단체요율 적용

- 1) ‘가’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 1) ‘가’ 및 ‘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만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1,000만원으로 함

나. 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피보험자의 변경

- 1)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 2)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변경 전 · 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 보험료 포함)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 · 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 거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라.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 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마.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 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 재할 수 있다.

-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아.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 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1]

보험계약자 확인서

본 안내문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 시 1인 이상의 유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 행방불명 등),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 _____ (인/서명)

[별첨2]

피보험자 유족 확인서

년 월 일

수신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발신 : ○○주식회사

제목 :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유족확인서

귀사로부터 고(故) ○○○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족에게 아래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야 래 -

1. 보험계약내용

가. 상품명 : ○○보험

나.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다. 피보험자 : 종업원(○○○님)

라. 계약일자 :

2. 청구보험금 : 0000원

상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확인서명을 첨부서류와 같이 제
출하오니 보험금을 계약내용에 명기되어 있는 수익자인 ○○주식회사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인/서명)